

의안번호	2211521
의 퇴 인	김재섭의원
회 답 일	2025. 8. 22.
추 계 번호	25B3863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2026년에 모든 장외발매소에 대하여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2027년부터는 매년 6개소의 장외발매소에 대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억 9,200만원, 2030년 9,4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7억 6,800만원(연평균 1억 5,4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장외발매소 영향 평가 실시 (안 부칙 제3조)	영향평가 대상 장외발매소(개 소)	25	6	6	6	6	49	9.8
	1개소당 용역 비	15.7	15.7	15.7	15.7	15.7	—	—
추가재정소요		392	94	94	94	94	768	154

주: 1. 2026년에 전체 장외발매소(25개소)에 대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2027년부터는 매년 6개소에 대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2. 한국마사회 자체 예산으로 실시 중인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비용에 대한 일반 예산 편성을 전제로 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부칙 제3조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특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모든 장외발매소에 대하여 제44조의3에 따른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부칙 제3조(장외 발매소 영향평가 실 시에 관한 특례)	○	•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참고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개정된 법률¹⁾에 따라 모든 장외발매소에 대하여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2026년에 장외발매소 전체에 대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2027년부터는 현행법령에 따라 매년 전체 장외발매소의 5분의 1 이상을 대상으로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함
 - 2025년 8월 기준 26개소의 장외발매소를 운영 중이나 2025년 12월에 1개소 운영 종료에 따라 2026년에는 25개소 운영 예정
- 한국마사회 자체 예산으로 실시 중인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비용을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전제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개요

- 한국마사회는 경마장 외의 장소에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발매소”라 함)을 설치·이전 또는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

1)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인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장외발매소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장외발매소가 주거 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평가(이하 "장외 발매소 영향평가"라 함)를 실시할 수 있음

[표 2] 장외발매소 운영 현황(총 26개소 운영)

구 분	수도권 (21개소)			지 방 (5개소)					소 계
	서울	경기	인천	광주	부산	대구	충남	경남	
소 유	4	5	3	1	—	1	1	—	15
임 차	5	3	1	—	1	—	—	1	11
합 계	9	8	4	1	1	1	1	1	2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2025. 8. 기준)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는 ①소음피해, 이용자 밀집 및 교통 유발 등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②학습권 침해 등 교육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음

- 정기평가: 장외발매소별로 7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하되, 매년 전체 장외발매소의 5분의 1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 수시평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장외발매소 또는 특정 평가항목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표 3]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실시 현황

구 분	평가대상		비고
2022	6개소	도봉, 동대문, 선릉, 영등포, 대구, 천안	정기평가
2023	6개소	강북, 구리, 시흥, 일산, 인천연수, 광주	정기평가
2024	6개소	광명, 수원, 종로, 청담, 인천부평, 창원	정기평가
2025	6개소	중랑, 분당, 안산, 의정부, 인천미추홀, 부산동구	정기평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나.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실시(안 부칙 제3조)

□ 본 추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2026년에 모든 장외발매소에 대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2027년부터는 매년 6개소의 장외발매소에 대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소요비용을 추계함

○ (연도별 영향평가 대상 장외발매소) ('26) 25개소, ('27~'30) 각 6개소

○ (1개소당 영향평가 용역비) 15,700천원

－ 94,050천원('25년도 영향평가 용역비)/6개소 = 15,700천원/개소

※ 이때 1개소당 영향평가 용역비는 추계기간 동안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

□ 추계결과,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7억 6,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실시 비용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장외발매소 영향 평가 실시 비용	대상 장외발매소 개소 수(A)	25	6	6	6	6	49
	1개소당 용역비 (B)	15.7	15.7	15.7	15.7	15.7	
추가재정소요(C=A×B)		392	94	94	94	94	768

주: 1. 2026년에 전체 장외발매소(25개소)에 대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2027년부터는 매년 6개소에 대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2. 한국마사회 자체 예산으로 실시 중인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비용에 대한 일반 예산 편성을 전제로 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한국마사회 자체 예산으로 실시 중인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비용에 대한 일반 예산 편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향후 일반 예산 편성 여부 및 영향평가의 규모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김성원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성원	02-6788-4650	holyone@assembly.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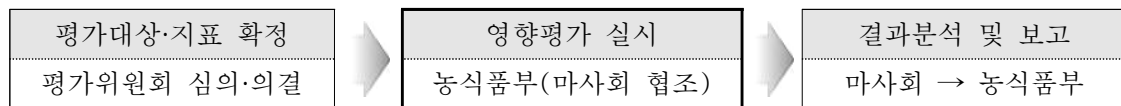
[참고자료]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시행 경과

- 연구용역을 통한 평가 기준·지표 정립('19)
- 한국마사회법, 동법 시행규칙 개정('20)
- 시범평가('19~'21) 및 본 평가 시행('22~)

□ 시행체계



□ 평가대상 : 연간 6개소

- 정기평가는 장외발매소별 7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 매년 전체 장외발매소의 5분의 1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2항제1호)

[장외발매소 운영 현황]

구 분	장외발매소	비고
서울	강동, 강북, 도봉, 동대문, 선릉, 영등포, 종로, 중랑, 청담	9개소
경기	광명, 구리, 분당, 수원, 시흥, 안산, 의정부, 일산	8개소
인천	인천미추홀, 인천부평, 인천연수, 인천중구	4개소
지방	부산동구, 광주, 대구, 천안, 창원	5개소

□ 대상선정 :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

- 위원회 구성(총 7명): 내부위원 3명, 농식품부 공무원 1명, 외부전문가 3명

□ 조사방법

- 외부 조사 전문기관 선정, 사전에 설계된 설문지 활용 개별 면접조사, 현장 조사원 관찰조사 및 환경분석 등 실시

□ 조사대상

- 지역주민, 학생, 인근 사업주 및 문화센터 회원 등 500명
* '24년: 지역주민 300명(60%), 학생 70명(14%), 사업주 50명(10%), 회원 80명(16%)

□ 조사항목

- 주거권, 학습권, 공익권 등 평가지표 근거 조사 실시

□ 결과활용

- (농식품부) 영향평가 결과 장외발매소 운영에 따른 부작용 예방 및 시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사회에 경고 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명령 시행(한국마사회법 제44조의3제3항)
- (마사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운영 현황과 부작용 등 문제점 파악, 문제점 및 지역사회 갈등 해소 방안 도출 및 개선 추진, 우수 사례 발견시 지역 주민 대상 적극 홍보 및 타 장외발매소 운영에 접목